

##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9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0호, 2018.5.3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8년 6월 11일  
보건복지부장관

###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1의 일부를 별지1,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.

### 부 칙

이 고시는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지2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